

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접수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17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9. 17

다. 상 정 일 자 : 1998. 9. 26(제70회 사하구의회

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, 수정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사회산업국장 주장우)

- 분뇨관련 수거대행업체의 물량격감, 인건비 및 운영경비상승 등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상향조정과
-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예규 제167조 규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
-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처분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을 명문화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현재 약 4,800세대로서 이용세대가 해마다 약10% 감소되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
-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당초 기본료 16,200원에서 4% 인상된 16,840원, 초과료 당초 1,170원에서 7% 인상된 1,250원으로 평균 5.5%가 인상되어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부산시 평균 기본료 17,870원보다 상승폭이 낮은 실정이나 이용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주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폭 인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

- 오수분뇨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 개정예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전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은 개정조례에 삽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수정안 요지(이상은 위원)

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제8조 제1항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현행대로 하며 제17조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제17조 제2항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조항은 개정안 내용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

7. 심사결과 : 수정의결(제석:5명, 찬성:5명)

붙 임 : 수정안 대비표 1부. 끝.

【별표 2】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

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(제8조 제1항 관련)

현 행				개 정 안				수 정 안			
구분	부과기준	수수료	적용기준	구분	부과기준	수수료	적용기준	구분	부과기준	수수료	적용기준
분뇨수집·운반수수료	10ℓ	200원	○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○ 배출자로부터 수집·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		10ℓ	320원	○----- ----- ----- ○----- ----- -----		10ℓ	200원	○----- ----- ----- ○----- ----- -----
정화조청소수수료	기본(0.75㎡이하)	16,200원	○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		기본(0.75㎡이하)	16,840원	○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	----- (-----)	16,200원	○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	초과(0.1㎡당)	1,170원	○ 청소된 오수(오수 포함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		초과(0.1㎡당)	1,250원	○----- ----- -----		----- (-----)	1,170원	○----- ----- -----
	할증(개별청소시)	기본 및 초과료의 5%	○ 요금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.		----- (-----)	----- ----- -----	○----- ----- -----		----- (-----)	----- ----- -----	○----- ----- -----